

의안번호	2215149
의 퇴 인	전종덕의원
회 답 일	2026.2.13.
추계번호	25C697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1조의2 (돌봄에 관한 특례)	○ 공단은 가입자가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을 돌보는 경우 그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제1항)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제2항) ○ 그 밖에 동거가족의 구체적 범위,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1조의2 (돌봄에 관한 특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돌봄에 관한 특례(안 제51조의2)

- 개정안에 따라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입자 중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인 동거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방문 돌봄서비스나 돌봄수당을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

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개정안은 돌봄을 급여화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보정에서 돌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총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¹⁾.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²⁾,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³⁾⁴⁾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범위, 돌봄 단가 및 돌봄급여를 받게 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개정안은 보험급여 범위·방법·절차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 개정안에 따른 동거가족의 구체적인 범위, 방문 돌봄서비스 및 돌봄수당 지급 기준 및 단가 등이 정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족돌봄자에 대한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조사가 없으므로 동거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규모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⁶⁾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2) 건강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4) 2022~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5)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보다 많을 때는 구입금액을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

6)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23.05.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